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		배포일시	2021. 4. 5.(월) / 총 5매(본문5)	
담당 부서	국토부 주택기금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김지혜 • ☎ (044) 201-3337, 3338	
	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은영, 사무관 정지화, 주무관 한남희 • ☎ (044) 200-3160, 3163, 3164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」 전면 개편

- 비수도권 일부 이전·임대 이전·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청장 이문기)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('21.3.29., 관계부처 합동)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(세종시)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, 「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」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*하였다.

* 「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」 및 「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」(행복청 고시) : 4.5. 행정예고

※ 상위규정인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

- 이번 개정은 '11.4.1.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,
-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,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.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〉

	현행	개선안
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	수도권 + 비수도권	수도권 한정(비수도권 제외)
	이전 + 신설	이전으로 한정 (신규 설치 제외)
	본사이전 + 지사이전	본사이전으로 한정(일부이전 제외)
	취득·건설이전 + 임대이전	취득·건설이전 한정(임대 제외)
자족기능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	(기업) 일반기업 :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: 투자요건 없음 ※ 투자금 : 토지매입비 제외	일반기업 :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: 투자금 30억 ※ 투자금 : 토지매입비+건축비 제외
	(병원) 30병상 이상의 치과·한방·요양병원 등	500병상 이상 종합병원
	(연구기관) 연구원 30명 이상	연구원 100명 이상
	(국제기구) 정부간 기구 + 산하기구+지역사무소	삭제
특공비율 추가 축소	'21년 40% → '22년 30% → '23년 이후 20%	'21년 30% → '22년 이후 20%
중복특공 불인정	행복도시·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	1인 1차례로 한정(중복공급 삭제)

-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7조 개정)
- 우선,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.
 - 또한, 행복도시에 본사·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·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.
 -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·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.
 - 다만, 법령개정·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*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.
- *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(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)
-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(「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」 개정)
-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.
 -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*되고,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.
- * 일반기업 : 투자금 30억 → 100억 / 벤처기업 : 투자금 요건 없음 → 30억 / 투자금 산정시 : 토지매입비만 제외 → 토지매입비 + 건축비 제외
-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,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③ **특별공급 비율 축소** (「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」 개정)

-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**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***된다.

* '21년 40% → 30%, '22년 30%·'23년 이후 20% → '22년 이후 20%

④ **중복 특별공급 금지**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 개정)

-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·혁신도시·기업도시·도청 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,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.

- 또한, 다자녀·신혼부부·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,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.

-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·종류와 관계없이 **모두 1인 1회로 한정***,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.

*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

-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('21.7.6. 시행)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,

-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.

-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*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.

*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·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, 공급계약 취소

-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*할 수 있다.

* www.naacc.go.kr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

-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우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, (전자우편) hannamhee10@korea.kr, (팩스) 044-200-3179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김지혜 사무관(☎ 044-201-3338)이나

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(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·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) 정지화 사무관(☎ 044-200-3163), 한남희 주무관(☎ 044-200-31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